



노인인권보호지침

[교육 목표]

1. 노인인권과 노인권리보호에 대해 설명한다.
2. 노인학대 유형에 대해 설명한다.
3.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을 실천한다.



인권/ 노인인권1

- 인권 :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 1991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



노인인권2

*본 자료는 바야다홈헬스케어의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을 금합니다.

- 노인의 권리가 국제사회의 처음 관심사가 된 시기: 1980년대 초반
- 노인의 권리가 국제사회 본격적 관심사가 된 시기: 2000년대 중반
- 개인 고령화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
- 사회적 변화→ 다양한 노인문제/인권문제
- UN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정책권고 제시: 제1,2차 UN 세계고령화총회 및 정책 권고
- 다른 취약인구(아동,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의 기존 권리협약 제정에 대한 비형평성
- 2014. 5. 14. UN 인권위원회의 3년 임기 노인인권독립전문가 임명

<출처>최성재, "노인 인권 보호·증진의 국제적 동향과 쟁점"(한국노년학회, 2018)



노인인권3

- 노인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제약을 경험한다. 따라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와 이를 충족하기 위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다. 노인들은 건강, 소비자로서의 노인, 주거와 환경, 가족, 사회복지,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등의 영역에서 권리로서 보호받아야 인권을 확보할 수 있다(비엔나 국제 고령화 행동계획, 1982).

노인의 법적 권익 보호(노인의 법적 권익 보호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

1) 일반적 기본권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이 속한다. 하위 유형으로는 자유와 존엄,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강제노동과 노예제도의 금지, 고문 금지, 법 앞에서의 평등, 차별 금지 등이다.

2) 자유권

신체적 자유권,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정신적 활동에 관한 자유권, 경제 생활에 관한 자유권, 정치활동에 대한 자유권 등이 속한다. 노부모로부터 미리 유산을 상속받거나 금전을 증여받은 후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는 노인의 경제생활에 관한 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사회권

경제권, 노동권, 주거공간을 보장받을 권리, 의료보장에 대한 권리, 사회적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 요양보호권, 평생교육권, 문화생활권, 가족유지권 등이 속한다.



인권 감수성

*본 자료는 바야다홈헬스케어의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을 금합니다.

인권문제를 인식하는 감성.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인권문제로 민감하게 느끼는 것.

사회구조적으로 상대적 약자(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라면 '나'의 인권도 보장됨.





노인권리보호: 재가노인 인권 보호

① 생존권과 경제권 보호

공적연금과 경제활동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② 건강권 보호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의 치료, 예방,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재가 노인의 건강 유지와 치료권을 보장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가서비스를 통해 노인이 익숙한 자신의 집에서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③ 교육·문화권 보호

자신의 능력에 맞게 교육을 받고 여가와 문화생활 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원, 경로당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 문화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④ 주거 환경권보호

지역사회 내의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접근성이나 통합성 강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삶의 질 향상 등은 주거 개선과 환경 보호의 효과이다. 법령에서는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신고 의무와 절차, 응급조치의 의무 등을 규정하여 재가노인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노인학대의 유형1

-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꼭 드셔야 할 약물을 못 먹게 하는 행위
 - 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먹게 하는 행위
 - 강제로 일을 강요하는 행위
 -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 주먹 등으로 때리는 행위
 - 밀어서 넘어뜨리는 행위

-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하는 행위
 -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 이성교제나 사회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자신에 대한 주요 결정에서 소외시키는 행위



노인학대의 유형2

- 3)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
 -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인 농담이나 희롱을 하는 행위
 -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하는 행위

-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하는 행위
 - 허락없이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
 - 허락없이 인감을 사용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노인학대의 유형3

- 5) 방임 -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생활비가 없는 어르신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 행위
 -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해하거나 돌봄을 거부해서 생명이 위협받는 행위
 -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을 방치하는 행위
-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연락을 두절하고 왕래하지 않는 행위
 -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
- 7) 중복 학대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형이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한 학대 유형.



노인학대 현황1

노인에 대한 학대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2014년 대비 약 46.9% 증가(3,532건→5188건)하였다[표1]

표 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학대사례) (2018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자료)

(단위: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학대사례	3,532	3,818	4,280	4,622	5,188
	33.4	32.1	35.6	34.7	33.5
증감률	-	8.1	12.1	8.0	12.2



노인학대 현황2

표 2. 연도별 학대발생 장소 (2018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자료)

•**가정 내 학대**의 경우 2018년 4,616건(89.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대비 **11.8%** 증가하였다[표2].

•가정 내 학대가 더욱 심각한 것은 발견이 용이하지 않고 가족관계 특성상 학대를 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고 숨기려는 성향이 강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단위: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가정내	2,983	3,276	3,799	4,129	4,616
	84.5	85.8	88.8	89.3	89.0
생활시설	246 ^{주1)}	206 ^{주3)}	238 ^{주3)}	327	380
	7.0	5.4	5.6	7.1	7.3
이용시설	44	57	16	16	41
	1.2	1.5	0.4	0.3	0.8
병원	100	88	24	27	65
	2.8	2.3	0.6	0.6	1.3
공공장소	74	80	94	58	42
	2.1	2.1	2.2	1.3	0.8
기타	85	111	109	65	44
	2.4	2.9	2.5	1.4	0.8
계	3,532	3,818	4,280	4,622	5,188
	100	100	100	100	100

주 1) 학대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를 포함한 수치임. 동 경우를 가정 내 학대로 포함할 경우, 203건(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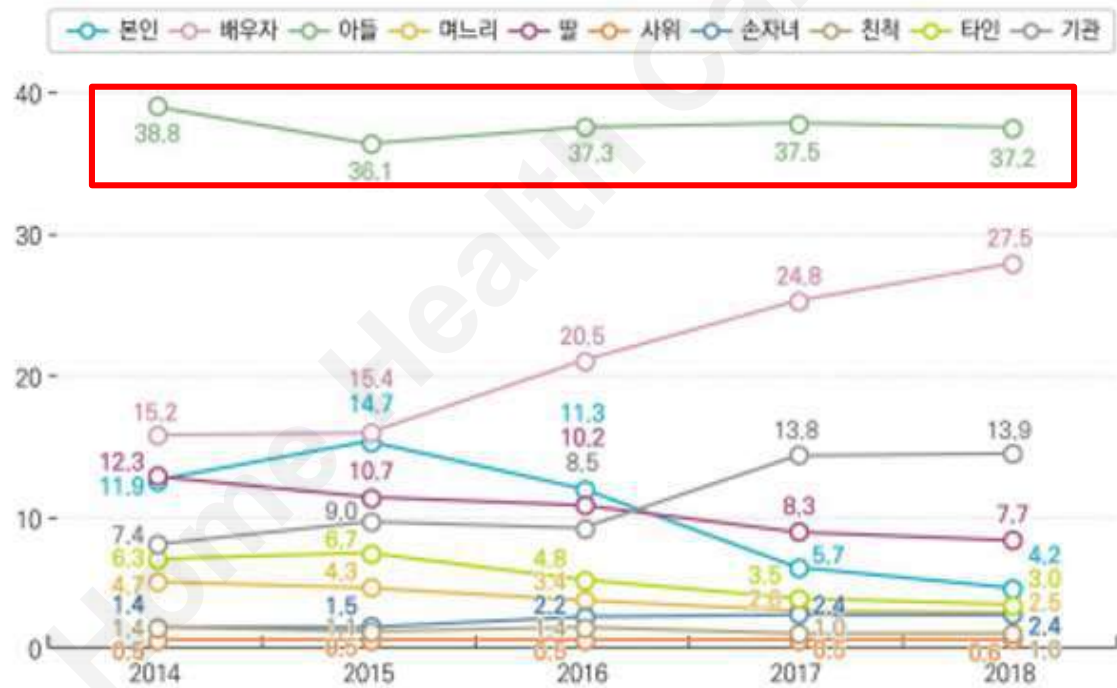
2) 학대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를 포함한 수치임. 동 경우를 가정 내 학대로 포함할 경우, 190건(5.4%)

3) 학대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를 가정 내 학대에 포함한 수치임(2015년~2016년)



노인학대 현황3

표 3.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2018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자료)



- 학대행위자 중에서는 지속적으로 학대피해 노인의 “아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 최근 “배우자” 유형이 2순위로 증가하여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노인학대 현황4

표 4. 연도별 학대 유형 비율 (2018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자료)



노인학대의 시작이 대부분 **정서적 학대에서 시작되어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 학대로** 이어지고 정서적 학대의 경우 뚜렷한 흔적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영양보호사, 방문간호사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노인학대가 심각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노인학대 예방: 정부

1. 지역사회 예방체계 구축
 -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모니터링, 인식개선 사업, 학대 예방교육 강화
2.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신고의무자 확대 및 교육 강화,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권한 강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중앙 및 지역사례판정위원회' 법적근거 마련
3. 피해자 보호·가해자 처벌강화
 - 원가정 복귀 어려운 피해노인 지원강화, 지역사회 복귀시 자원연계, 노인보호전문기관 기능개선 및 인력확대, 학대행위자 교육실시 등 재발방지 위한 노력 강구, 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4. 시설학대 예방
 - 시설운영 투명성 강화, 시설학대 평가 강화 및 명단 공표



노인학대 예방: 재가서비스

1. 노인의 신체적·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기
2.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3.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하지 않기
4.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헐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해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기
5.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됨
6.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기
7.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 제공하기



노인학대 대응방법 : 학대피해노인

• 응급상황



피신할 때 가져갈 물건: 현금, 신분증, 인감, 카드, 약

• 비응급상황



1577-1389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출처> 법제처, 노인학대! 신고부터 예방까지(일반노인용)



노인학대 대응방법 : 노인학대 신고 의무1

노인 학대를 목격 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될 경우

→ 신속히 바야다 재가센터(1670-1379)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수사기관 등에 상담 및 신고하기

- 1) 노인 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 2) 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신속한 조치 취하기(*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생명이 위급한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 대처하기



노인학대 대응방법 : 노인학대 신고 의무2

◆ 노인학대 신고의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및 제61조의2제1항제2호).



ALOHA (영화 '보살핌의 정석' 중)



출처 > Wikipedia, The Fundamentals of Caring

A : Ask
L : Listen
O : Observe
H : Help
A : Ask again